

공 시 송 달 공 고

중구 관내 도로상 불법노점 적치로 인한 도로법 위반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'소유자 불명'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제 목 : 행정대집행 계고
2. 법적 근거 : 「도로법」 제73조(원상회복), 「행정대집행」 제3조(대집행의 절차)
3. 위반 사항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-204 도로 상 판매대 불법적치
※불법적치 노점(판매대) 위치 및 사진 : 행정대집행 계고서의 현황 참조
4. 행정처분명 : 불법노점(판매대) 행정대집행 계고
5. 공시송달 대상 : 불법노점(판매대) 소유자
6. 공고기간 : 2024. 05. 04. ~ 2024. 05. 20.(17일간)
7. 공고 및 게시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8. 공고내용

○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(을지로6가 18-204) 도로에 설치된 소유자 불명의 판매대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공작물 등에 해당되지 않아, 같은법 제74조(원상회복),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 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2024.04.17.(수)까지 자진수거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,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4.05.20.(월)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「도로법」 제73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에 따라 계고합니다.

○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같은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9. 문의 :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☎02-3396-6053

붙 임 :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.

2024. 05. 04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제2024-~~422~~호

행정대집행 고고서

성 명 : 소유자 불명

주 소 : 해당없음

귀하의 거리가게(노점) 시설물(매대)에 대해 2024년 4월 17일까지 자진 철거명령을 공시송달{건설관리과-3986(2024.4.3.)}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도로 관리 및 거리가게 질서 확립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4년 5월 20일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「도로법」 제73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 치	대 상	수 량	대집행 방법
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-204	동대문 거리가게(노점) 시설물(매대) 및 적치물 등 일체	1개소	철거

2024년 5월 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위치도 및 현황사진



위치도 : 중구 을지로6가 18-204 도로
(소유자 불명)



현황사진